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6고정2262 특수협박
피 고 인 A
검 사 김봉현(기소), 이정민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엄○○(국선)
판 결 선 고 2017. 5. 18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3,000,000(삼백만)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(십만)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압수된 낫 1개(증 제1호)를 몰수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피해자 신○○(30세, 여)와 이웃 관계로 평소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던 사이이다.

피고인은 2016. 4. 30. 13:37경 남양주시 화도읍 노블○○ ○동 ○호 피해자의 주거

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낫(총 길이 70cm, 날 길이 약 24cm)으로 피해자를 향해 약 3회 내려찍을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였다.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증인 신○○의 법정진술

1. 피해 사진

1. 증 제1호의 현존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284조, 제283조 제1항(벌금형 선택)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1. 몰수

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

판사 권기백 _____